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20. 7. 14. / (총 4매)	담당부서	아동권리과
과 장	변 호 순	전 화	044-202-3430
담 당 자	오 재 욱		044-202-3432

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

- 870여 개소, 1만 5,000여 명 대상 지자체·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.
-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를 방문해 실시하며,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, 종사자의 학대, 약물 복용·관리,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.
-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,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.
- 아울러 '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'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.

*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, 예방 강화, 외부 접촉의 최소화 등

□ 아동학대 관련 이상·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, 심리·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,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*, 형사고발**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.

○ 아울러, 점검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도 및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.

* 중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1회 발생 시 시설 폐쇄

**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, 신체적·정신적 학대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조치

□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·수시 점검,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,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,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.

○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·정서·인지·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·재활프로그램*을 진행하고 있다.

* ('12) 600명, 6억 원 → ('18) 725명, 10억 원 → ('20) 1,200명, 16억 원

□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“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,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대책을 모색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< 붙임 > 1. 아동인권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 개요
2.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·형사처벌 기준 요약

붙임 1

아동인권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 개요

□ 점검개요

- (점검대상) 전국 아동복지시설(학대피해아동쉼터, 자립지원시설 제외)에서 보호 중인 거주 아동 전체*

* 약 870여 개소, 약 15,000명

- (점검기간) : '20.7.6(월) ~ 11.30(월) 약 5개월
- (점검반) 시·군·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편성
- (주요 점검사항) 학대신고절차 준수여부,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여부, 학대관련 교육이수, 종사자 학대관련, 아동훈육, 체벌, 언행, ADHD 사유·진료과정·약물복용·관리, 건강 등 총 12개 항목
- (점검방법) 시·도 책임하에 시·군·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

□ 점검결과 조치

- 학대 정황 발견시 증거자료 확보(서류, 사진 등) 경찰 신고 및 행정처분, 시군구 및 경찰(아동보호전문기관) 등과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
- 중대사항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실시
-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조치, 즉시개선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실시

붙임 2

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· 형사처벌 기준 요약

*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적용

구분	행정처분		형사처벌		
	법인	시설	법인대표	시설장	종사자
성적 학대	법인허가 취소	시설 폐쇄	양벌규정 행위자와 동일벌금	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	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신체적·정신적 학대			"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중대한 경우	법인허가 취소	시설 폐쇄	"	"	"
- 경미한 경우	-	1개월 정지→ 3개월 정지→ 시설폐쇄	"	"	"
방임 학대			"	"	"
- 중대한 경우	법인허가 취소	시설 폐쇄	"	"	"
- 경미한 경우	-	1개월 정지→ 3개월 정지→ 시설폐쇄	"	"	"
신고의무 해태	-	-	-	500만원 이하 과태료	500만원 이하 과태료